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·벤처연구센터
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·벤처연구센터 관리·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변종오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·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, 상위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, 관련 조례와 용어를 통일하여 해석상 혼동을 막고자 조례를 개정함.

4. 주요내용

- 제명을 변경함.

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·벤처연구센터 관리·운영 조례

→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 조례

-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위치를 수정함(안 제2조)
- 상위법령 저촉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, 별표를 신설함(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, 제3조, 제7조)

5. 검토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,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- 현행 조례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,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동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.
-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 납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, 별표를 신설하여 이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함.
-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명칭이 명확히 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,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함.
-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례안 예고('23. 6. 2. ~ '23. 6. 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·벤처연구센터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률의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, 별표를 신설하여 이용료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